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 선고 2017가단10405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진로종합식품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6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6. 5. 20. 접수 제569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정수경

별지